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2027285(본소), 2021나2027292(반소)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 손해배상(기)]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2027285(본소), 2021나2027292(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535731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전호성, 이태희

변론종결 2022. 5. 20.

판결선고 2022. 6.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535731(본소), 2020
가합535748(반소)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4,46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11,716,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및 제3면 제1행 기재 “C” 부분을 “J”으로, 제4면 [표2] 순번 2번의 금액(원)란 기재 “6,40,000”을 “6,400,000”으로 각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자재 내역인 제1심판결문 제4면 기재 [표2] 중 단가 부분(단, 순번 9 내지 11번 부분 제외)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으로서 피고와 합의한 적이 없고, 순번 8번 기재 오토스크류볼트는 6,000개가 아닌 4,000개만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았고 나머지 2,000개는 피고의 현장소장 F가 별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면서 제1심이 인정한 금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순번 1, 2, 3, 4, 7번 기재 각 자재의 단가(5번은 원고의 청구가 기재된 부분임)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발주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5)에 기재되어 있는 단가와 동일하고, 한편 피고는 피고가 일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주서에 임의로 단가를 기재한 것일 뿐 원고와 사이에 합의된 공사 단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발주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그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 소속 현장소장 F는 제1심법정에서 원고가 보내온 이 사건 견적서를 받아 보았고,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한 자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F는 원고가 보내온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공급 수량이나 단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순번 6번 기재 목재난간 설치(사급) 부분과 관련하여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 23.경 동작구에 데크계단B에 핸드레일휀스 59경간 대신 목재난간(L1500×H1000) 73경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보고를 하면서 위 목재난간 73경간에 대한 공사대금을 21,452,218원(1경간 당 293,866원)으로 책정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6. 9. 26. 및 2017. 4. 13. 서울지방조달청에 위 목재난간(HJ-506)을 1경간 당 260,000원에 납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한 위 목재난간의 단가 230,000원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 점, ④ 순번 8번 오토스크류볼트와 관련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오토스크류볼트의 가격이 1개당 7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 300원이 과다해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현장소장 F가 이 사건 견적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현장소장 F가 별도로 오토스크류볼트를 구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에서 기각된 순번 5번을 제외한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공급 자재의 수량 및 단가는 그 기재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동작구 소속 담당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 자재를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이 기망 내지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고, 피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재시공을 하게 하거나 공사를 지연시키는 방법 등으로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동작구 소속 담당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피고를 속이거나 압박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재시공을 하게 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영난, 판사 장준아, 판사 이재혁